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0조의3(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) ① (생략)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<u>거래로</u>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(이하 이 장에서 “부당 행위 계산”이라 한다)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시가인정액</u>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의3(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거래(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가인정액(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)</u>-----.</p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## □ 지방세법 시행령

개정 전	개정 후
<u>&lt;신설&gt;</u>	<p>제11조의3(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) 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”란 3억원 이상이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(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)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</p>
제11조의3 (생략)	제11조의4 (현행 제11조의3과 같음)